

국회도서관 직제

2009.4.27. 국회규칙 제149호 전부개정
(타)일부개정 2010.2.24 국회규칙 제152호
개정 2010.4.27 국회규칙 제155호
개정 2011.8.26 국회규칙 제167호
개정 2011.12.27 국회규칙 제172호
개정 2013.12.13 국회규칙 제183호
개정 2016.11.24 국회규칙 제19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의회정보실·법률정보실·정보관리국·정보봉사국 및 국회기록보존소를 둔다.<개정 2011.8.26>

②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 실·국 및 관(이하 “실·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삭제<2013.12.13>

제5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1.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도서관 소관 규칙·규정·내규 등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진정 및 사정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교육훈련·연수 및 사서교육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0. 공무원의 임용·복무·상별·연금·건강보험·그 밖의 인사관리
11.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2. 물품관리·조달 및 검수
13. 도서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4. 다른 실·국(국회기록보존소를 포함한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지시한 사항

제6조(의회정보실) ① 의회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개정

2013.12.13>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12.1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8.26>

1. 의회정보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2. 의회정보의 검색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의회정보 관련 자료 발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국외자료의 조사·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입법지식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회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자료의 수집·장서화 및 제공에 관한 사항
 8. 인터넷자원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회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 ④ 삭제<2013.12.13>

제7조(법률정보실) ① 법률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도서관의 장서개발·대외협력·운영 등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률정보의 조사·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외국법률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법률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5. 법률정보협력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법률도서관 관련 열람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률문헌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8. 법률정보의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법률전자도서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률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8.26]

- 제8조(정보관리국) ① 국장은 이사관·정보관리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6.11.24>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11.24>
1. 도서관 정보화 및 전자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4. 시소러스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참조파일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정보교류 협력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
7. 데이터 기반 융합·분석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클라우드 기반 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화 관련 표준화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최신 정보기술 연구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11. 전자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자료의 목차·초록·원문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3. 전자자료의 복원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4. 석·박사학위논문의 종합목록 작성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5. 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16. 주전산기·정보통신망 및 보안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산관련기기의 설치·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9조(정보봉사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자료조직·보존 및 열람 정책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선정·구입·납본·교환 및 기증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대학·협회·학회 및 국제기구 등의 발간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발간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분류 및 목록 등 정리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의 열람·대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도서관자료의 이용안내 및 이용상담에 관한 사항
8. 열람실·자료실·서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서관자료에 대한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① 국회기록보존소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로 보한다.<개정 2010.2.24, 2013.12.13>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4.27, 2013.12.13>

1.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감독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4. 국회기록물의 이관·보존·평가·열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국회 관련 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 등 특수 유형 기록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6. 국회의원기록 및 구술기록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7. 전자기록물의 이관·평가 및 장기보존 등에 관한 사항
8. 국회기록물 및 도서관자료의 복제·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9. 국회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
10. 국회기록물 정리(整理)·기술(記述)·편찬 및 콘텐츠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의 정보공개청구 등에 관한 사항

12. 기록정보 관리·서비스 시스템 등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개정 2013.12.13>) 의회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외자료 조사·번역, 정보시스템 운영, 전자도서관 구축 및 자료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2.13>

제12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기록정보 관리·정보 제공 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구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3>

[본조신설 2011.8.26]

제13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ogn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7급·8급·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12.13]

제15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부칙 <제149호, 2009.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18인(9급 또는 계약직 15인, 기능직 기능 10급 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국회인사규칙) <제152호, 2010.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55호, 2010.4.27>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 2011.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일반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조정되는 12인(4급·5급·연구관 또는 계약직 4인,
6급·연구사 또는 계약직 2인, 9급 또는 계약직 6인)직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에 따라 해당 별정직 직위의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2호, 2011.12.27>

이 규칙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 2013.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공무원법」
부칙(제11530호)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6호, 2016.11.24>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개정 2016. 11. 24>

국회도서관 공무원 정원표

총 계	317
정무직 계	1
도서관장	1
일반직 계	316
관리관 또는 이사관	2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
이사관·정보관리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	1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	1
3급 또는 4급	9
4급	10
4급 또는 5급	18
5급	27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5급 또는 연구관	3
5급 또는 전문경력관	13
5급·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	4
6급	116
6급 또는 연구사	8
6급 또는 전문경력관	4
6급·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	7
7급	38
8급	23
9급	18
9급 또는 전문경력관	1
9급·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	2
9급 또는 임기제	8